

국정없는 무한정쟁 품질로써 승부하자!

##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우)302-803/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5-1/☎042,526-0999,536-0999/전송532-0999 담당 이석수

문서번호 : 大忠레08-125호

시행일자 : 2008년 10월 08일

(경 유)

받는곳 : 받는곳 참조

참 조 :

|   |    |   |   |  |
|---|----|---|---|--|
| 선 |    |   | 지 |  |
| 결 |    |   | 시 |  |
| 접 | 일자 |   | 결 |  |
|   | 시간 |   | 제 |  |
| 수 | 번  | 호 | 공 |  |
|   |    |   | 람 |  |
| 처 | 리  | 과 |   |  |
| 담 | 당  | 자 |   |  |

### 제 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자재 중소기업제품 레미콘 구매 협조 요청

1. 평소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국가경제 기반산업의 초석이 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 의거 레미콘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분리발주)토록 법령으로 정하고 레미콘에 대해서는 불임과 같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대상품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레미콘에 대해서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지역 중소기업체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건설공사와 최대한 분리발주, 조달요청 하여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에 귀 기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레미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이 안되고 시공사의 일괄발주로 인하여 자체 생산시설의 설치 및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과의 과당경쟁 입찰로 진행된다면 국가법령에도 위배되지만 힘이 약한 주변 중소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귀 기관의 분리발주로 인한 조달요청시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소량이라도 양질의 제품을 최선을 다해서 납품하겠음을 첨언 합니다.

붙 임 : 1.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발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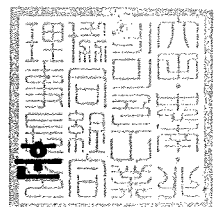
2.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73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74호 사본 1부.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관한지침)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35호

##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이사장 장 중 훈



받는곳 :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발췌문”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9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를 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문”

[일부개정 2008.4.10 대통령령 제20765호]

제7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공사 예정 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재 중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대상품목(제2호에 규정된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공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3

통상산업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치플랜트”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라 함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3.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고정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를 얻어 레미콘의 생산·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4. “생산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혼합장치가 단위시간당 생산하는 용량을 말한다.
5. “출하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가 실제 출하할 수 있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생산능력의 80%에 해당하는 용량 중 작은 쪽을 말한다.

- 다만, 실제 출하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80%로 본다.
6.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를 말한다.
  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이라 함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 다만,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
  8. “레미콘 수요성수기”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으로 한다)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대규모 구조물”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공공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고시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시공자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그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현장배치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 ①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

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②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①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등
2. 압축강도가 400kg/cm<sup>2</sup>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cm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3.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콘크리트·샷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4.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②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2.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③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공동협력) ①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당해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 ①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변경내역 공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 중 그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변경내역 : <붙임 1>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 변경내역을 반영한 전문 : <붙임 2>

2008년 2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이 변경내역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된 경우 및 지정내역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I. 총 칙

### 가. 목 적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I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20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http://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II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39개 품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http://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법률마당 → 공고 → 2008년 공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체”

|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br>번호 | 세부품명                                               | 산업<br>분류번호   | 비 고                |
|----|-----|------------|----------------------------------------------------|--------------|--------------------|
| 40 | 레이콘 | 30111505   | 레이콘(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음) | <u>23322</u> | 한국레이콘공업<br>협동조합연합회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제품〉 “발체”

| 번호 | 제품명 | 물품분류<br>번호 | 세부품명 | 산업<br>분류번호   | 비 고                |
|----|-----|------------|------|--------------|--------------------|
| 32 | 레이콘 | 30111505   | 레이콘  | <u>23322</u> | 한국레이콘공업<br>협동조합연합회 |